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95
----------	------

발의연월일 : 2025. 1. 14.

발의자 : 조인철 · 주철현 · 문진석  
서천호 · 한정애 · 정진욱  
박용갑 · 박민규 · 노종면  
박수현 · 황정아 · 이해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